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규정 삭제〉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82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규정 삭제	2
※ 참고자료: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업무 비교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9.
3. 회 부 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제3호 삭제).

Ⅲ. 검토의견

1.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규정 삭제(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개정안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제29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¹⁾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 (생략)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⑤ (현행과 같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략)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²⁾에 근거 규정 및 배치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음.

현행법 제29조제4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보건관리자³⁾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주⁴⁾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7년 도입된 사항⁵⁾임.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2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8백억원 또는 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공사금액 1,400억원 또는 근로자 600인 증가 시 1명씩 추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5328호, 1997. 4. 10., 일부개정, 시행 1997. 7. 1.)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 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기업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조항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규모에 따라 1명 또는 최대 2명의 보건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 채용 규모가 증가하게 됨⁶⁾.

[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관리자 채용인원

사업의 종류	규모 (상시근로자)	보건관리자 수
1.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2. ~ 22.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기계, 전자부품, 자동차 제조업 등	2,000명 이상	2명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 이상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23. 제2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식품품, 목재 등)	3,000명 이상	2명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명 이상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24. 농어업, 임업 23.~4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등	5,000명 이상	2명 이상
	50명 이상 5,000명 미만 (사진처리업은 100명 ~ 5,000명)	1명 이상
4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6) 예를 들어, 7,800억원 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현행 1명에서 특례 폐지 시 6명 채용이 필요함.

또한, 2024년 10월 현재 고용노동부의 노사누리시스템에 따르면,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은 전체 27,154개으로, 개정안과 같이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2명 이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3.7% 수준인 997개(제조업·기타업종 443개, 건설업 554개)인 것으로 조사됨.

[표 3] 전국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현황

구분		사업장 수	선임자 수
제조업·기타업종	전체	25,399개소	29,804명
	2명 이상*	443개소	1,097명
건설업	전체	1,755개소	2,264명
	2명 이상*	554개소	986명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2명 이상 선임 대상 사업장이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명 채용 가능 사업장을 말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노사누리 시스템 참조)

개정안과 같이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추가 채용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직업병 예방, 근로자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과 보건관리자 자격자의 취업 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근로자 500명 이상의 화학물질 등 제조업,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일부 제조업 및 공사금액 2,200억원 또는 근로자 1,200명 이상의 건설업 등 영위하여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사업주의 경

우 인원 채용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동 보건관리자와 관련한 규제완화 특례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기준을 현재 사업환경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과 같이 특례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법 공포 6개월 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채용여건이 어려운 사업장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장이 보건관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국내 투자환경은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채용부담이 증가하는 점, 전체 사업장 중 96% 이상에서 산업재해가 미발생⁷⁾하고 있는 점,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부상치료·응급처치 등을 제외하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⁸⁾ 등과 중첩된 부분이 많은 점, 보건관리자 인건비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비용이 축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보건관리자 특례 폐지를 통해 보건관리자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특히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안전관리자의 경우 11명까지 채용 상한⁹⁾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보건관리자 채용인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측면과 관련 제도의 복원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고려하여 보건관리자 채용인원 확대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에 의하면, 산업재해(사고+질병재해)자 수는 약 13만 명이며 사업장 수는 약 298만 개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계산상 96%의 사업장은 재해자가 발생하지 않음. (사업장별 사고건수에 대한 자료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전체 사고인원을 사업장으로 나눈 비율을 통해 산출한 수치이므로 실제 사업장별 사고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8)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 비교는 [참고자료] 참조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또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보건관리자 겸직허용 규정 삭제는 보건관리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수급 부담을 가중하는 등 기업경영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며,

대한건설협회는 특히 건설업은 사고재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¹⁰⁾ 질병재해 비중은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별로 높지 않으므로¹¹⁾ 보건관리자 채용을 늘릴 필요가 크지 않음에도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보건관리자 배치인원을 무한정 증가토록 하는 점 등이 불합리하여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0

- 10)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1천명당 질병재해자 2.5명, 사고재해자 12.0명으로 사고재해의 비중이 약 4.8배 높음.
- 11)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의 질병재해자 비율은 1000명당 2.5명으로 광업(337.9명), 제조업(2.2명) 등과 비교할 때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음

【업종별 질병재해 현황】

구 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의 사업	그 외	총계
근로자(A)	9,713	4,006,893	2,233,184	1,120,705	12,095,817	1,170,795	20,637,107
질병재해자(B)	2,861	8,564	5,524	898	5,277	207	23,331
질병사망자(C)	421	311	130	78	243	21	1,204
질병재해율 [(B+C)/A*1,000]	337.9	2.2	2.5	0.9	0.5	0.2	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

※ 참고자료 :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업무 비교

보건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직의 직무(산업보건직으로 선임한 경우)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의료행위: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 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 규정 요약